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28일

발 의 자: 김지향, 강동길,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혜영, 도문열,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성흠제,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윤영희,
이경숙, 이상욱, 이숙자,
이원형, 이종배, 이종태,
이희원, 최유희, 허 훈,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출생아 통계에서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0.59명이란 충격적 수치를 기록하였음.
- 그동안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체감효과가 미미한 대책 등으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임.

- 따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교육비 등의 다자녀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혜택 대상인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의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해 다자녀 가족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13세→만 18세) 확대(안 제2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3세”를 “만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 (다만, 막내가 <u>13세</u>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p> <p>5. ~ 8.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만 18세</u> ----- -----.</p> <p>5. ~ 8. (현행과 같음)</p>